

대학도서관을 위한 교수신분 지침¹⁾

미국도서관협회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 작성
이 병 목 옮김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971년 미국도서관협회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ACRL)는 대학사서를 위한 교수신분 기준 (Standards for Faculty Status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ans)²⁾을 채택하였다.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는 대학사서를 위한 교수의 직급, 신분 및 종신제직권 부여를 지지하고 이러한 신념을 옹호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들을 작성하였었다.

1. 대학사서의 선발과 임명을 위한 지침과 절차 (1977)-ACRL 작성.
2. 대학사서의 교수신분에 관한 공동성명서 (1972)-ACRL/AAUP/AAC 공동 작성.
3. 대학사서의 임명, 교수 직급에서의 승진 및 종신제직권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모범문서 (1987)-ACRL 작성.

대학사서를 위한 교수의 직급, 신분 및 종신제직권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도서관을 위하여 미국도서관협회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는 다음에 기술하는 교수신분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 목적은 어떠한 대학구조에서건 대학사서의 권리, 특전, 의무는 이들 전문직이 그들이 근무하는 대학의 사명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일원임을 계속하여 반영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보장하는데 있다.

1. 전문직적 책임

사서는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한 영역 내에서 일반적인 책임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가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가 책임을 수행한 성과는 그의 동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평가기준은 공표되어야 하고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에 활용할 모든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통 할

사서는 자관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는데 참여하여야 하고, 자기 동료들 채용, 심사, 존속, 재임용하는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사서는 대학의 교육정책을 개발하는데 참여하여야 하고, 교과과정을 기획하는 일에 일역을 분담해야 하며, 대학의 통할구조 내에서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3. 계 약

사서의 임명은 1년 이상의 기간에다 문서에 의한

1) 이 지침은 "ACRL Guidelines for Academic Status for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란 표제로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Vol. 51 No.3 (March 1990), pp. 245-246에 수록된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한편, 이 지침은 1990년도 미국도서관협회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 동계회에서 최종안으로 채택되었다.

2) 이 기준의 본 역자의 우리말 역본은 정보관리연구, 제12권제2호(1979.4.), pp. 33-35에 수록된 바 있다.

계약, 협정 혹은 임명이어야 한다. 임명 문서는 근무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고용을 보증하여야 한다. 사서는 7년을 초과하지 않는 시용기간(試用期間)의 경과와 동료에 의한 심사를 포함한 심사과정을 거쳐, 그가 해당 조건과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을 경우 지속적인 고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4. 보수

사서의 봉급 체계와 각종 혜택은 사서와 대등한 교육, 경력 혹은 책임을 가진 다른 학사 범주에 속하는 직원의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5. 승진과 봉급 인상

사서는 그의 전문직적 능력과 효과를 근거로 하여 여러 직급으로 승진되어야 한다. 동료심사제도(peer review system)가 승진과 봉급 인상 결정을 위한 절차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6. 휴가와 연구비

사서는 대학 내부의 연구비를 수혜할 자격이 주어져야 하고, 대학 외부의 그러한 자금도 신청하도록 권장받아야 한다. 대학과 도서관 당국은 사서에게 일반 휴가, 안식년 휴가 및 기타 행정적 지원 수단

을 제공하여 그의 연구와 기타 전문직적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진작하여야 한다.

7. 학문의 자유

사서는 미국대학교수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AAUP)가 1940년에 학문의 자유와 종신재직권에 관한 원칙 성명서(Statement of Principles on Academic Freedom and Tenure)에 천명한 학문의 자유를 보호받을 자격을 갖는다.

8. 해고 혹은 재임용 거부

임용기간 중의 사서의 해고는 오직 대학이 설정한 절차와 합당한 이유를 통해서만 대학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재임용 거부는 적절한 사전 통고, 동료심사, 소청 기회부여를 포함하여야 한다.

9. 소청

사서는 소청 절차(불평, 불만제기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청절차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결지을 수 있는 단계들을 포함하여야 하고, 대학의 보복행위나 소청인의 절차남용에 대해 효과적인 보호 역할을 하여야 하며, 대학의 해당 규정 및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 신 간 안 내 ■

●美國圖書館思想의 研究/小倉親雄著·朴熙永譯/아세이문화사/국판/서울/360p./1990년/6,000원

연락처 : 중구 장충동1가 48-24, 전화 : 279-9266

●圖書館學 學術論文綜合索引/덕성여자 대학교/도서관학과 학생회/4.6배판/서울/276p./1991년/특판 12,000원, 보급판 5,000원

연락처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49번지, 전화 : 902-8121(교)404